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 
2021. 12. 8.(수) 10:00

제23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**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**  
(도시안전국 소관)



**복지건설위원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48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1. 11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11. 10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

## 3. 설치근거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」

## 4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### 가. 기금사업의 목표

법령에 의거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사후 관리

### 나.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

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, 안양천 침수정비

금천형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이자 지원, 선별진료소 전용화장실 운영

## 5.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

### ○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1년도말 조성액 ㉑	2022년도 기금운용계획			2022년도말 조성액 ㉓=㉒+㉑	비고
		수입㉒	지출㉔	증 감 ㉒=㉔-㉓		
재 난 관 리 기 기	5,713,976	957,598	613,076	344,522	6,058,498	

### ○ 자금 운용 계획

#### -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입액	전년도수입액	증 감
계	957,598	830,401	127,197
공공예금 이자	93,060	63,457	29,603
일반회계 전입금	864,538	766,944	97,594

#### -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지출액	전년도지출액	증 감
계	613,076	442,320	170,756
선별진료소 화장실 운영	23,100	25,800	△ 2,700
금천형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이자	239,976	116,520	123,456
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	200,000	150,000	50,000
안양천 침수정비	150,000	150,000	0

## 6. 검토의견

### ○ 기금 개요

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67조, 제68조,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」에 따라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사후 관리를 위해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임

### ○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#### - 수입내역

전입금	8억 6,450만원
공공예금 이자수입	9,300만원

#### - 지출내역

선별진료소 사무관리	2,310만원
금천형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대출 이자지원	2억 3,997만원
지하주택 침수방지 및 안양천 침수정비	3억 5,000만원

- 본 기금안은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목표로하여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.

## 관련 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21. 10. 21.] [법률 제18092호, 2021. 4. 20., 일부개정]

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### 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(약칭:지방기금법)

[시행 2021. 4. 6.] [법률 제17836호, 2021. 1. 5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기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다만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### 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(약칭: 재난안전법)

[시행 2021. 6. 23.] [법률 제17698호, 2020. 12. 22., 일부개정]

제67조(재난관리기금의 적립)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10.6.8.]

**제68조(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)**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.

② 재난관리기금의 용도·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0.6.8.]

## □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(약칭 : 재난안전법 시행령)

[시행 2021. 10. 14.] [대통령령 제32026호, 2021. 10. 5., 타법개정]

**제74조(재난관리기금의 용도)** 법 제68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
가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

나.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. 다만,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.

2.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

가.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

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

2)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·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

나.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

[전문개정 2020. 1. 7.]

## □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 조례」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12.29.>

**제2조(기금의 조성)**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관리 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1.12.29>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립액 <개정 2011.12.29>

2.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

**제3조(기금의 용도)**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

가.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

나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2조(특정관리대상시설)제2항에 따른 시설(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의 안전진단 및 보수·보강 사업

다.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라.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

마. 안전문화 활동 육성·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

바.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(단, 유지관리 제외)

사. 하천시설, 빗물펌프장, 배수관, 우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·정비·보수 사업

아. 재난취약시설, 재난현장,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, 수당 및 경비

자. 기금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 경비

2. 재난 예보·경보시설

가. 자동우량경보시설, 자동음성통보시스템, 재해문자전광판, 자동경보시설 등

나.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

3. 재난피해시설(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 시설)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

- 가. 수해·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
- 나.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 확보 대책사업
- 다. 제설 또는 수방용 자재 및 삽날구입(단, 제설차량 구입, 습염식 제설시스템 설치,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제외) 및 임차
- 라. 법 제31조(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)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
- 4.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
  - 가.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 사업
  - 나.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
  - 다.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
- 5.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
  - 가. 풍수해저감계획, 비상대처계획(EAP)수립,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
  - 나. 재해원인분석, 침수흔적조사,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
  - 다.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
- 6.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<개정 2011. 12. 29., 2018. 2. 27.>
- 7.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<신설 2012. 12. 31.>
- 8.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신설 2018. 2. 27.>